

의안번호	제 593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20일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임영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3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20일  
발의자 : 임영은, 이옥규, 박상돈,  
심기보, 오영탁, 육미선,  
이수완

### 1. 개정이유

-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도에서 시·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057 호, 2018.12.24. 공포, 2019.12.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도등록문화재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라. 입법예고 : 2020. 11. 13. ~ 2020. 11. 18.

##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를 “법 제53조와 제7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도지사가”로 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및 제8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 3. 충청북도 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의 등록과 말소

제19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및”을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및 도등록문화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자

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4조와 제25조에 따른 지정"을 "지정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지정 고시 및 통지)"를 "(지정 또는 등록 고시 및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지정할"을 "지정 또는 등록할"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지정서의 교부)"를 "(지정서 또는 등록증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지정서 또는 등록증의 교부)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지정 또는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정"을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또는 등록"으로, "지정을"을 "지정 또는 등록을"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지정의 해제)"를 "(지정의 해제 또는 등록의 말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해제"를 "해제 또는 등록을 말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제에"를 "해제 또는 등록의 말소에"로, "해제 및"을 "해제, 말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와"로, "지정서를"을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을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

정 또는 등록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로,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을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 도등록문화재 · 문화재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같은 호 중 “지정 또는”을 “지정, 등록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호, 제4호 및 제6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 또는”을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또는”으로, “도지정문화재의”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로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그 말소

제58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2조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된”을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등록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자료”를 “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3조제2호 및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를 각각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로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u>지정문화재</u>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u>지정문화재</u>, <u>등록문화재</u>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 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략)</p> <p>1.~5. (생략)</p> <p>6. 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u>법 제53조제2항</u>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p> <p>7.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5. (현행과 같음)</p> <p>6. 등록문화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u>법 제53조와 제70조제3항</u>에 따라 문화재청장과 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p> <p>7. (현행과 같음)</p>
<p>제4조(기능) (생략)</p> <p>1.~2. (생략)</p> <p>&lt;신설&gt;</p>	<p>제4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u>충청북도 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u>의 등</p>

현 행	개 정 안
	<u>록과 말소</u>
4. <u>도지정문화재</u> 와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4.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와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5. <u>도지정문화재</u> 와 문화재자료의 <u>현상변경 허가</u>	5.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와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허가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u>도지정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10. (생략)	9.~10. (현행과 같음)
제19조(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u>도지정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재예방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u>도지정문화</u>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u>

현 행	개 정 안
<p><u>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p> <p>③ (생 략)</p> <p>④ <u>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u>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19조의2(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① (생략)</p> <p>1. <u>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u>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p> <p>2. (생 략)</p> <p>3. 그 밖에 <u>지정문화재(보호물</u>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소유자, 관리</p>	<p><u>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생 략)</p> <p>제19조의2(문화재 금연구역의 지정)① (현행과 같음)</p> <p>1.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주거용 시설은 제외한다)</p> <p>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u>도지정문화재(보호물</u>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u>도등록문화재와</u></p>

현 행	개 정 안
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 (생략)	문화재자료 중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 (현행과 같음)
<u>제4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u>  <u>제26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u> 시장·군수는 <u>제24조와 제25조</u> 에 따른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제4장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u>  <u>제26조(지정 또는 등록에 관한 자료 제출)</u> 시장·군수는 <u>지정 또는 등록</u>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사진, 도면과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제27조(지정 고시 및 통지) ①</u>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u>지정할</u>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u>제27조(지정 또는 등록 고시 및 통지) ①</u>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u>지정 또는 등록할</u>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u>제28조(지정서의 교부) ①</u> 제2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또는	<u>제28조(지정서 또는 등록증의 교부)</u>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

현 행	개 정 안
<p><u>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u> 이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② 제2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 또는 명예보유자 인정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p>	<p><u>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 또는 등록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지정서 또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u> 이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p>
<p><b>제29조(지정의 효력발생 시기)</b>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지정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되어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b>제29조(지정 또는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b>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또는 등록은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또는 등록을 통지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도보가 발행되어 고시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p>
<p><b>제30조(지정의 해제)</b> 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p>	<p><b>제30조(지정의 해제 또는 등록의 말소)</b> 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그</p>

현 행	개 정 안
<p>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u>해제</u>할 수 있다.</p> <p>②·③ 삭제</p> <p>④ (생략)</p>	<p>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u>해제</u> 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정의 <u>해제에</u> 관한 고시, 통지, <u>해제 및 그 효력 발생 시기</u>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따른 문화재 <u>지정의 해제</u> 또는 등록의 <u>말소에</u> 관한 고시, 통지, <u>해제, 말소 및 그 효력 발생 시기</u>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다.</p>
<p>⑥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7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u>지정서</u>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⑥ <u>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가 제5항과 제27조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 <u>지정서</u> 또는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p>
<p>⑦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가 <u>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날</u>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⑦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가 <u>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날</u>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제33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p>	<p>제33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p>

현 행	개 정 안
<p><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p> <p>②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p>	<p><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p> <p>②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p>
<p><b>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b></p> <p>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u>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u>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u>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b>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b></p> <p>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u>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해당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u>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라 시·군 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u>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u> 소유자·관리자와 해</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시·군 등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u>도지정문화재·도등록문화재·문화재자료의</u> 소유</p>

현 행	개 정 안
당 시·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자·관리자와 해당 시·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u>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도지정문화재·도등록문화재·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⑤ <u>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u>	⑤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사항) <u>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제35조(허가사항) <u>도지정문화재, 도 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u>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u>	1.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 등록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u>

현 행	개 정 안
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p>2.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 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p> <p>3.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 자료(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p>	<p>2.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p> <p>3.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과 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기념물을 표본, 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p>
<p>제40조(신고 사항)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p>	<p>제40조(신고 사항)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p>

현 행	개 정 안
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連署)로 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2.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9. (생략)	7.~9. (현행과 같음)
제45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	1.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관리상황

현 행	개 정 안
재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이 그 문화재의 보존에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 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 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관한 문화재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35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제35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	제4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

현 행	개 정 안
<p>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관리 단체의 장은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u>도지정문화재의</u>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및 관리 단체의 장은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에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와 <u>문화재자료의</u>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제47조(수리 등) ①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나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p>	<p>제47조(수리 등) ①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문화재를 수리하려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나 문화재수리업자(이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이라 한다)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p>

현 행	개 정 안
<p>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b>제54조(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b></p> <p>①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p>	<p>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54조(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등)</b></p> <p>①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재가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고시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④~⑤ (생 략)  제55조(관람료의 징수) ①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보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관람료의 징수) ①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보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7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傳承)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⑥ (생 략)  ⑦ (생 략)  1.~2. (생 략)  3. <u>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과 그 해제</u>  4.~6. (생 략)	③~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그 말소</u>  4.~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58조(직권에 의한 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u>도지정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8조(직권에 의한 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u>도지정문화재</u>, <u>도등록문화재</u> 또는 문화재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u>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u>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지시·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권리 변동이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p> <p>② (생략)</p>	<p>제6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u>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지시·기타 처분 등에 대하여 권리 변동이 있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2조(표창)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u>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된</u> 경우에 매장 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li> <li>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li> </ol>	<p>제62조(표창)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u>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 또는 등록된</u> 경우에 매장 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li> <li>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li> </ol>

현 행	개 정 안
로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로서 도지정문화재, 도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 도난, 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삭제	
4. <u>도지정문화재</u> ,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4.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보호, 공개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 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63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63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에 따른 <u>도지정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	2. 제45조에 따른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 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 명령 및 조치
3. 제47조에 따른 <u>도지정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의 경미한 수리	3. 제47조에 따른 <u>도지정문화재</u> , <u>도등록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의 경미한 수리

## 관련법령 발췌

### □ 문화재보호법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70조의2(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 ① 시·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